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7. 1.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장경제의 악화와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민생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통해 군민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4조)

라.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star020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 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동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하동군수가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 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하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